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18차 개정, 2021.8.1.]	제·개정 [19차 개정, 2021.11.1.]	비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상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u>산학협력단의</u> 교외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상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u>천안산학협력단의</u> 교외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u>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u>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u>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u>	[자구수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u>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신설)	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2개 이상의 <u>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용역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u>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자구수정-호변이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제)	[삭제]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4. “공동연구기관”이란 <u>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u>	5.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u>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자구수정-호변이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5. “위탁연구기관”이란 <u>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u>	6.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u>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자구수정-호변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6. 내지 7. (생략)	6. 내지 7. (현행과 같음)	[호변이동]
(신설)	9. “연구개발성과”란 <u>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u>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신설)	10. “연구개발정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u> <u>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u> <u>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u> <u>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신설)	11. “연구지원”이란 <u>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현행 [18차 개정, 2021.8.1.]	제·개정 [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12.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신설)	13.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용어정의 추가
8. “연구책임자”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4. “연구책임자”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자구수정-호변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9. (생략)	15. (현행과 같음)	[호변이동]
10.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6. “학생연구자”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말한다.	[자구수정-호변이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제2조 (적용범위) (생략)	제2조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u>제3조 (준용)</u>	
(신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제 2 장 연구비 중앙관리		
<u>제3조 (연구비 중앙관리 목적)</u>	<u>제4조 (연구비 중앙관리 목적)</u>	[조변이동]
① 연구정보의 획득, <u>연구과제 신청</u> , 연구협약(계약) 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충실도를 높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정보의 획득, <u>연구개발과제 신청</u> , 연구협약(계약) 체결, 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충실도를 높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u>연구행정시스템</u> '을 활용 하여 과제등록, 연구비청구,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중앙관리를 수행한다.	③ ' <u>산학연구행정시스템</u> '을 활용하여 과제등록, 연구비 청구,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중앙관리를 수행한다.	[자구수정]
<u>제3조의2 (신청자격)</u>	<u>제4조의2 (신청자격)</u>	[조변이동]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u>연구과제</u> 또는 연구비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내지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u>연구개발과제</u> 또는 연구비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제4조 (제안서 제출) (생략)</u>	<u>제5조 (제안서 제출) (현행과 같음)</u>	[조변이동]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제5조 (연구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제6조 (연구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청구)	[조변이동]
① 내지 ③ (생략)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청구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공문,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청구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u>연구과제</u>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청구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공문,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청구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u>연구개발과제</u>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제6조 (연구과제 등록)	제7조 (연구개발과제 등록)	[조변이동]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등록요청서 및 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에서 ' <u>통합행정시스템</u> '을 통하여 과제를 생성하면 내용을 검토 및 보완하여 과제 신청을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계약(협약) 체결 신청서(서식3)를 제출하여 과제등록을 산학협력단에 요청하고, 산학협력단에서 ' <u>산학연구행정시스템</u> '을 통하여 과제생성을 하면 내용을 검토 및 보완하여 과제 신청을 한다.	[자구수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시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u>연차과제시 전차제출서류와</u> 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시 <u>개인정보</u> 수집·이용·처리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u>연차과제 시 전차 제출서류와</u> 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u>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u>	[자구수정] - 내용추가
제7조 (연구비 집행)	제8조 (연구비 집행)	[조변이동]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u>관리기관</u> 및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u>산학협력단</u> 및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구수정]

[19차 개정]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u>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사용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u>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u>연구비카드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자구수정]
③ 연구비 신청시 <u>제출하는 증빙 서류는 거래를 증빙하는 지출증빙(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지로용지 등)과 지출용도를 증빙하는 연구증빙(회의록, 출장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연구비 신청 시 <u>거래를 증빙하는 지출증빙(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로용지 등)과 지출용도를 증빙하는 연구증빙(회의록, 출장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자구수정]
④ <u>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u> 경우는 세무신고와 관련되므로 분기별 신고기한(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u>(세금)계산서의</u> 경우는 세무신고와 관련되므로 분기별 신고기한(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⑤ <u>연구비 집행 신청은</u> 정산 기간 내 완료하고 남은 연구비 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반납하며, 미반납 연구비는 1년 이내 연구비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로 귀속한다.	⑤ <u>연구비 신청은</u> 정산 기간 내 완료하고 연구비 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반납하며, 미반납 연구비는 1년 이내 연구비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로 귀속한다.	[자구수정]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제8조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9조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조번이동]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u> 」에 준하여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u> 」에 준하여 계상한다.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1의 1.</u> 인건비 : 해당 <u>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u>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연구원 등록은 <u>참여연구원등록신청서를</u>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매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u>연구지원인력인건비</u>, 학생인건비로 구분하고, 연구계획서상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u>1.</u> 인건비 : 해당 <u>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u>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원 등록은 <u>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를</u>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매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u>정기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별도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u>).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u>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u>, 학생인건비로 구분하고, <u>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다.</u> 연구자별 총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합산하되 월 단위로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자구수정-호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가. 내부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자구수정-목번이동]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u>전임교원 및 조교 등</u>)이 당해 <u>연구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평균 월급여 또는 당해 평균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계지급분 포함인지, 호봉수에 따른 지급인지와 매년 또는 경우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u>참여율을</u>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생략) 3) 본교 전임교원 및 조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및 전임연구원이 당해 <u>연구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단가(참여율 100%일 경우)는</u> (별표1)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집행한다.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u>전임교원 등</u>)이 당해 <u>연구개발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평균 월급여 또는 당해 평균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계지급분 포함인지, 호봉수에 따른 지급인지와 매년 또는 경우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u>인건비계상률을</u>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및 전임연구원이 당해 <u>연구개발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단가(인건비계상률 100%일 경우)는</u> (별표1)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집행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자구수정 및 삭제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u>연구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본교의</u> 단가에 <u>참여율을</u>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합쳐 총금액을 <u>계상한다.</u> 2)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외부인건비 단가(참여율 100%일 경우)는 (별표1)를 기준으로 기준단가를 책정하고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 집행한다. 4)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u>연구개발과제에</u>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별표1)의</u> 단가에 <u>인건비계상률을</u>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합쳐 총금액을 <u>계상하여야 한다.</u> 2) (삭제) 3) (삭제) 2)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구수정-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자구수정 및 삭제
다. <u>연구지원인력인건비</u>	다. <u>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u>	[자구수정-목번이동]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19차 개정, 2021.11.1.]	비고
1) 연구행정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본교의</u> 단가를 기준으로 <u>실지금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합쳐 총금액을 계상한다.</u> 2) 연구지원인건비 단가는 (별표1)에 따른다. 3) <u>연구지원인력</u>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u>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u>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생략)	1) 연구행정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며, <u>(별표1)의</u> 단가를 기준으로 <u>실지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법정 부담금을 합쳐 총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u> 2) (삭제) 2) <u>연구근접지원인력</u>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u>연구수당</u>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u>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u> 3)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자구수정 및 삭제
<u>1의 2.</u> 학생인건비 <u>가.</u>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계정별 <u>학생연구원의</u>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u>나.</u>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 해당되어 통합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u>다.</u> (생략)	<u>라.</u>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계정별 <u>학생연구자의</u>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6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에 해당되어 통합관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목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2의 1.</u>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은 <u>세부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 항목으로 나눌수 있다.</u>	<u>2.</u>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은 <u>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로 구분한다.</u>	[자구수정-목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가. <u>연구시설 및 장비비</u> 1) 당해 <u>연구과제</u>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연구수행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포함)의 <u>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등의</u> 부대경비를 말한다. 2) <u>기기·장비구입은</u>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u>연구과제의</u>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협약에 명시된 연구 최종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u>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 제외)</u> 다) (생략) 라) 협약서상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시설·장비 (다만, 관리기관에 연구계획 변경 신청 승인 제출로 사전승인을 받은 때 제외)– <u>마) 연구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의 경우</u> (신설)	가. <u>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u> 1) 당해 <u>연구개발과제</u>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연구수행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포함)의 <u>구입·설치 등의</u> 부대 경비를 말한다. 2) <u>시설·장비구입은</u>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u>단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가) 당해 <u>연구개발과제의</u>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협약에 명시된 연구 최종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u>구입·설치완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u> 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u>라) 연구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공간 및 연구공간)·장비에 대한 구입·설치비의 경우</u> <u>4)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u>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현행 [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 [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u>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u> 1)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연구수행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포함)의 임차·사용대차 등의 부대 경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 임차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 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임차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협약에 명시된 연구 최종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 완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 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라) 연구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공간 및 연구 공간)·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의 경우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나. 유지·보수 및 운영비</u>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말한다. (신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기관 공통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유지보수비 나)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u>다.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u> 1)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 운영·유지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진행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관 공통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유지보수비 나)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u>라. 연구인프라 조성비</u>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구입·설비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입은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다.	
<u>2의2. 연구재료비</u> : 연구재료비 항목은 세부적으로 <u>시약·재료 구입비</u> 및 <u>전산 처리·관리비</u>, <u>시작품비</u> 항목으로 나눌수 있다.	<u>3. 연구재료비</u> : 연구재료비 항목은 세부적으로 <u>연구재료 구입비</u>, <u>연구개발과제 관리비</u>, <u>연구재료 제작비</u>로 구분한다.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u> 1)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u>전산 처리·관리비</u>를 말한다. 2) <u>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의 구입·검수에</u> 관한 사항은 <u>본 대학 실험실습비 집행에</u> 준하여 집행한다. 3) (생략) 가) 당해 <u>연구과제</u> 수행과 관련이 없는 <u>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u> 나) <u>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u>가. 연구재료 구입비</u>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u>관련 부대비용</u>을 말한다. 2) <u>구입·검수에</u> 관한 사항은 <u>본 산학협력단 연구용 재료 구입에 관한 규정</u>에 준하여 집행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당해 <u>연구개발과제</u> 수행과 관련이 없는 <u>연구재료 구입비</u> 나) <u>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u>다) (삭제)</u> <u>라) (삭제)</u>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u>나. 연구개발과제 관리비</u>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를 말한다. 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구입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u>나. 시작품비</u>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시제품 · 시작품 ·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를 말한다.</u> 2) 외부제작 시작품의 구입 · 검수 · 관리 ·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실험실습비 집행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한다. 4)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5)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u>세금계산서</u>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u>다. 연구재료 제작비</u> 1)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시험제품·시험설비 등의 제작경비(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u>를 말한다. 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구입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5)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u>(세금)계산서</u>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3. 연구활동비 : 가. 연구활동비는 참여연구원의 국내외출장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사무용 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등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자구수정-목변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추가
(신설)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목변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다. 전문가활용비 세부 집행 기준은 본교 특별강의료 지급기준(별표3)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기술도입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외부전문 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1. 전문가활용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3)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자구수정-목변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추가
라. 회의비와 식대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다.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을 말한다. 다의 1. 일반 회의비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자구수정-목변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회의비 및 식대 분리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나. <u>국내외출장여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표5, 6)</u>	라. <u>출장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말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u> 라의 1. <u>국내외출장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표5, 6)</u>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추가
마. <u>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등) 등의 구입·설치·임차는 협약에 명시된 연구 최종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완료(검수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 제외)</u>	마. <u>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u> 마의 1. <u>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등의 구입·설치·임차,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u>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바. <u>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등)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등)의 구입은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서식4)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u>	바. <u>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u> 바의 1. <u>사무용기기(컴퓨터·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u> 바의 2. <u>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다과 및 소모성 물품 등 필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자는 과도한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u>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신설(추가)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신설)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를 말한다. 사의 1. 야근(특근) 식대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아.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자. 그 밖의 비용은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자의 1. 수수료는 환전, 통관, 신문 광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을 말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4. 연구수당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다.	5.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자구수정-목번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내용추가
가.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해야하며, 이때 인건비는 미지급·현물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한다.	가.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인건비 포함하고,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계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평가기준(별표 10)에 따라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별표9)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u>원칙으로 하나, 중도 참여 종료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u>	라.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u>원칙으로 한다.</u>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신설)	바.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단,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사. 연구수당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 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아.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신설)	차. 전문기관 사업별 “연구수당”의 정의 및 집행 방법이 상이하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6. (생략)	6. (현행과 같음)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u>연구비중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u>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u>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u>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이내에서 <u>계상하며</u> ,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u>계상(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u> 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7. (생략)	7. (현행과 같음)	
가. <u>간접경비</u> 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가. <u>간접비</u> 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자구수정]
나. <u>간접경비의</u>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나. <u>간접비의</u>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자구수정]
다. 내지 라. (생략)	다. 내지 라. (현행과 같음)	
마. 간접비의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u> 에 준하여 계상하며 간접비의 <u>집행시 간접비세부사용기준(별표.7)에</u> 의하여 집행한다.	마. 간접비는 <u>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u> 에 준하여 계상하며 간접비의 <u>집행시 간접비 세부사용 기준(별표7)에</u> 의하여 집행한다.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8)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u>제13조에</u>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8)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u>제14조에</u>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u>제9조 (연구계획 변경)</u>	<u>제10조 (연구계획 변경)</u>	[조번이동]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통합행정시스템”상</u>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산학연구행정시스템”상</u>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u>제10조 (연구잔액 및 이자) (생략)</u>	<u>제11조 (연구잔액 및 이자) (현행과 같음)</u>	[조번이동]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제11조 (유형자산의 귀속)	제12조 (유형자산의 귀속)	[조변이동]
① 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구 종료 후 대학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연구비로 <u>구입한</u>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구 <u>종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에</u>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u>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u>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구수정]
② 본 대학 비품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② 본 <u>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에</u>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자구수정]
제12조 (감사)	제13조 (감사)	[조변이동]
① 내지 ② (생략)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1. 감사의 범위 : 단위 <u>연구과제</u> 또는 사업	1. 감사의 범위 : 단위 <u>연구개발과제</u> 또는 사업	[자구수정]
2. 감사자 : <u>연구기획과 직원, 사무국장</u>	2. 감사자 : <u>단장이 지정한 감사인</u>	[자구수정]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u>연구지원과</u> 과제 담당자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u>연구지원</u> 과제 담당자	[자구수정]
4. 내지 5. (생략)	4. 내지 5. (현행과 같음)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사무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u>회부 등</u>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사무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u>회부 등의</u>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구수정]
③ 내지 ④ (생략)	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u>특정연구과제</u> ,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u>특정연구개발과제</u> ,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자구수정]

[19차 개정]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u>연구지원과</u> 과제 담당자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u>연구지원</u> 과제 담당자	[자구수정]
4. 내지 5. (생략)	4. 내지 5. (현행과 같음)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u>회부 등</u>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u>회부 등의</u>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13조 (정산, 귀책, 변상등)	제14조 (정산, 귀책, 변상 등)	[자구수정-조변이동]
① <u>연구과제</u>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 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u>연구개발과제</u>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② 내지 ③ (생략)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연구제한)	제15조 (연구제한)	[조변이동]
본 <u>규정을</u>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일정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본 <u>지침을</u>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15조 (지침의 변경)	제16조 (지침의 변경)	[조변이동]
① 본 지침은 <u>천안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u>	① 본 지침은 <u>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u>	[자구수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3 장 학생인건비 관리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제16조 (목적)	제17조 (목적)	[조변이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7항에 따라 <u>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서</u> 시행하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7항에 따라 <u>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서</u> 시행하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17조 (적용대상)	제18조 (적용대상)	[조변이동]
① 내지 ② (생략)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u>학생연구원에게</u>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u>학생연구자에게</u>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18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제19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조변이동]
(생략)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① <u>학생연구자의</u>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u>학생연구원</u>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① <u>학생연구자의</u>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u>학생연구자</u>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내지 ⑦ (생략)	② 내지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내지 제23조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생략)	제20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내지 제24조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현행과 같음)	[조변이동]
제24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5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조변이동]
① 내지 ② (생략)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1. 연구책임자는 <u>학생연구원등록신청서와</u>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 기관에 제출한다.	1. 연구책임자는 <u>학생연구자등록신청서와</u>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 기관에 제출한다.	
2. 내지 4. (생략)	2. 내지 4. (현행과 같음)	

[19차 개정]

현행[18차 개정, 2021.8.1.]	제·개정(안) 작성안[19차 개정, 2021.11.1.]	비고
③ 내지 ⑤ (생략)	③ 내지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 (생략)	제26조 (<u>학생연구자</u> 인권 및 권익보호)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조변이동]
(신설)	<u>부칙</u>	
	<u>⑩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1.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적용 시행한다.</u>	[부칙신설]
(신설)	<u>부기(개정내용)</u>	
	<u>⑰ 19차 개정(2021.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적용 전면 개정</u>	[부기(개정내용) 신설]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개정 [19차 개정, 2021.11.1.]					비고			
<별표 1> 제8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1> 제8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1-1.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1-1.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기준 인건비	비고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 기준 인건비	비고		
일반 연구원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6,000,000		연구원		책임급연구원 (연구책임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6000000원	-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 구분 - 인건비 구분에 따른 세분류별 세부적요(자격 사항) 추가 - 월 기준 인건비 조정 - 기관부담금, 퇴직 적립금 구분 (미포함) - 세부적요 적용 사항 책임 명시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 력자	5,000,000				선임급연구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 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5000000원			
		박사급 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 력자	3,500,000				박사급연구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3500000원			
		석사급 연구원	석사 학위소지자	3,000,000				석사급연구원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700000원			
		학사급 연구원	학사학위소지자	2,500,000				연구보조원	학사급연구원	1. 학사학위 소지자		2100000원	
가. 상기 기준금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 나. 상기 기준 인건비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로 계상한다. 다. 기준 인건비는 상기금액을 기준 이내로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 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증빙서류(직전년도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가. 연구(보조)원의 세분류 구분은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상기 기준 인건비(월지급액)는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미포함) 나. 2. 직접비 내 인건비 계상 시 월지급액,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 당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기준 인건비는 상기 금액을 기준 이내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 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소득 증빙서류 (직전년도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해당 과제의 전문기관 및 분야에 따른)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별도의 산정기 준이 있을 시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2> 제8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 1> 제8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1. 인건비 관련 학생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2-1. 인건비 관련 학생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 자구수정																															
<table><tr><th>구분</th><th>세분류</th><th>세부 적요</th><th>월기준 인건비</th><th>비고</th></tr><tr><td rowspan="3">학생연구원</td><td>박사과정</td><td>박사과정생</td><td>2,500,000</td><td rowspan="3">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박사후연구원 및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td></tr><tr><td>석사과정</td><td>석사과정생</td><td>1,800,000</td></tr><tr><td>학사과정</td><td>학사과정생</td><td>1,000,000</td></tr></table>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기준 인건비	비고	학생연구원	박사과정	박사과정생	2,500,000	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박사후연구원 및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석사과정	석사과정생	1,800,000	학사과정	학사과정생	1,000,000	<table><tr><th>구분</th><th>세분류</th><th>세부 적요</th><th>월기준 인건비</th><th>비고</th></tr><tr><td rowspan="3"><u>학생연구자</u></td><td>박사과정</td><td>박사과정생</td><td>2,500,000</td><td rowspan="3">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td></tr><tr><td>석사과정</td><td>석사과정생</td><td>1,800,000</td></tr><tr><td>학사과정</td><td>학사과정생</td><td>1,000,000</td></tr></table>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기준 인건비	비고	<u>학생연구자</u>	박사과정	박사과정생	2,500,000	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석사과정	석사과정생	1,800,000	학사과정	학사과정생	1,000,000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기준 인건비	비고																																					
학생연구원	박사과정	박사과정생	2,500,000	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박사후연구원 및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석사과정	석사과정생	1,800,000																																						
	학사과정	학사과정생	1,000,000																																						
구분	세분류	세부 적요	월기준 인건비	비고																																					
<u>학생연구자</u>	박사과정	박사과정생	2,500,000	재학중 학생으로 휴학 / 졸업등의 현재 학생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 아님. (수료 후 연구등록생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석사과정	석사과정생	1,800,000																																						
	학사과정	학사과정생	1,000,000																																						
가) 상기 기준금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 나) 기준 인건비는 상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u>증빙서류</u>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다)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 지급 가능					가) 상기 기준금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 나) 기준 인건비는 상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u>소득 증빙서류</u>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다)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3> 3. 연구활동비 관련 세부 집행 기준액				<별표 3> 3. 연구활동비 관련 세부 집행 기준액				
3-1. 전문가별 강사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3-1. 전문가별 강사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 자구수정 - 내용신설
유형	특강자 구분	강사료(1회)	비고	유형	특강자 구분	강사료(1회)	비고	
A	1. 본 대학 명인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대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500,000원 이하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A	1. 우리 대학교 SM 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대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500,000원 이하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생략) (신설)				※ (현행과 같음)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전문가별 자문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3-2. 전문가별 자문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 자구수정
유형	특강자 구분	강사료(1회)	비고	유형	특강자 구분	강사료(1회)	비고	
A	1. 본 대학 명인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대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250,000원/ 시간 이내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A	1. 본 대학 명인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대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250,000원/ 시간 이내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3-2. 전문가별 자문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기준액) (생략) (신설) (신설) ※ 전문가의 소속기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함. ※ (생략)				3-2. 전문가별 자문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기준액) (현행과 같음) ※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의 전문가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함 ※ (삭제) ※ (현행과 같음)				- 내용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4> 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별표 4> 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집행기준) (생략) ※ (생략)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집행기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 자구수정 - 내용추가		
<별표 5> 5. 국외여비 집행 기준					<별표 5> 5. 국외여비 집행 기준							
5-1. (국외여비) 연구자 등급별 대상자					5-1. (국외여비) 연구자 등급별 대상자					- 자구수정 (연구원 추가)		
교내 여비등급		교내대상자	교외연구자 (공공기관 / 민간기업체)	국외(숙박비)		교내 여비등급		교내대상자	교외연구자 (공공기관 / 민간기업체)	국외(숙박비)		
				등급	구분					등급	구분	
제4호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상기 직급이외의 직원	제2호 나		제4호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연구원)	상기 직급이외의 직원	제2호 나		-
<별표 6> 국내여비 집행 기준 (교내 교직원 여비 지급기준 준용 2018.09.01., 국내여비 세부기준 2019.09.01. 준용)					<별표 6> 국내여비 집행 기준 (교내 교직원 여비 지급기준 준용 2018.09.01., 국내여비 세부기준 2021.05.01. 준용)							
6-1. 국내여비 책정 및 지급기준 가. 국내여비 지급기준(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6-1. 국내여비 책정 및 지급기준 가. 국내여비 지급기준(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 자구수정 · 연구원 추가 · 개인카드 사용 권장		
국내					국내							
등급		구분			등급		구분					
제4호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제4호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연구원)					
(주기사항 생략) * 일비와 식비는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운임과 숙박비는 법인카드 사용 후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주기사항 현행과 같음) * 일비와 식비는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운임과 숙박비는 개인카드 사용 (권장사항,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후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7> 간접비의 세부사용 기준	<별표 7> 간접비의 세부사용 기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가. 내지 나. (생략)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
<u>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u>	<u>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비용</u> ① 연구개발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②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내용수정-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다. 연구실 안전관리비:</u>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 <u>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② (생략)	<u>라. 연구실 안전관리비:</u>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 <u>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u> 」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u>	<u>마.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u> ①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④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내용수정-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u>바.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u>	<u>바.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u>	[자구수정-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현행	개정안	비고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관련 경비	사. (삭제)	[삭제]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명칭변경, 자구수정 -목번이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과학문화활동비: <u>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u>	가. 과학문화활동비: <u>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u> ①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② 강연·체험활동 등 연구실 개방 ③ 홍보전문가 양성 ④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내용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①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②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④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내용수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별표 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내지 자. (생략)	가. 내지 자. (현행과 같음)	
(비목별 구분 및 부당집행 기준) (생략 및 변경사항 별도 표기)	(비목별 구분 및 부당집행 기준) (생략 및 변경사항 별도 표기)	[자구수정, 내용신설 및 삭제]
·인건비 - <u>연구지원인력인건비</u>	·인건비 - <u>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u>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인건비 - 학생인건비	·인건비 - 학생인건비	
-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미시행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u>학생연구원에게</u> 지급한 금액	-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미시행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u>학생연구자에게</u> 지급한 금액	
14)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4) (삭제)	
·연구시설·장비비 - 구입·설치·임차비	·연구시설·장비비 - 구입·설치·임차비	
- 8) <u>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8) <u>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8) <u>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u>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하는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 8) <u>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u>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하는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 (신설)	- 12) 직접비 협약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활동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연구활동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15)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16)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현행	개정안	비고
·연구활동비 - 회의장 사용료 - 16) 해당 <u>연구과제와</u>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연구활동비 - <u>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비</u> - 32)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재료비 - <u>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u> - 1) <u>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u>전산 처리·관리비</u> ·연구재료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3) <u>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 공통 - 6) <u>평가시점이 연구개시후 지급 요청한 경우</u>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연구활동비 - 회의장 사용료 - 17) 해당 <u>연구개발과제와</u>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연구활동비 - <u>소프트웨어 활용비</u> - 33)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u>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비용</u> ·연구재료비 - <u>연구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관리비</u> - 1) <u>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u>연구개발 관리비</u> ·연구재료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3) <u>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u>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 공통 - 6) <u>연구개시 즉시 지급한 경우</u> 7) (현행과 같음) 8) <u>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u> 9) <u>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금액</u> 10) <u>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나. (생략)	가. 내지 나. (현행과 같음)	
다. 기록 및 니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 (삭제)	[삭제]